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38
----------	------

발의년월일 : 2020년 7월 6일
발 의 자 : 김상훈 의원(1명)
찬 성 자 : 이승미, 이세열, 장인홍, 김인호,
김태호, 서윤기, 우형찬, 김희걸,
이현찬, 강동길 의원(10명)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수소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광고물의 표시방법 (안 제2조제2항제8호)
- 나.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벽면에 설치하는 간판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구분(안 제4조제1항)

- 다. 입간판을 제작할 수 있는 재료를 정함 (안 제9조의2제1항)
- 라.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안 제10조제1항)
- 마.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에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 (안 제10조제1항)
- 바. 가로등에 설치하는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안 제11조제5항)
- 사.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허가·신고 수수료 규정 정비 (안 제27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유소, 가스충전소, 영 제3조제1호 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차양면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 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 2개 이내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이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명칭 등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양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차양면의 측면”을 “차양면”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현수식”을 “매다는 방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3조제6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료”란 비철(非鐵)금속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1호라목”을 “영 제17조제1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정보안내판”을 “교통정보안내판(영제29조제3항제6호 광고물은 제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에 제3조의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하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없는 범위에서 표시방법·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29조제5항 및 이조 제5항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⑤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로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 여야 하고, 세로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바닥(제10조제1항제4의2에 따

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제외한다)

제27조제3항 중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과오납한 경우 등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은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제6호·제7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p> <p>1. ~ 7. (생략)</p> <p>8. <u>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량면의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u></p> <p>9.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주유소 가스충전소, 영 제3조제1호 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 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차량면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 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간판 2개 이내</u></p> <p>9.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차양면의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가로크기는 차양면 가로 폭 이내여야 하며, 세로 크기는 제6호를 준용한다.

나.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 3.5제곱미터 이내, 두께는 2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 7. (생략)

8.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

2.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 영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명칭 등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양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가. 차양면-----

-----.

나. ----- 매다는 방식-----

-----.

3. ~ 7. (현행과 같음)

8. -----
----- 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

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크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6호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생략)

② ~ ④ (생략)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 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영 제3조제6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료”란 비철(非鐵)금속을 말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 목-----

-----.

1. (생략)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 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 횡단보도 쉼터, 가로영상문화시설(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

3. 4. (생략)

<신설>

5. (생략)

②·③ (생략)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② (생략)

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교통정보안내판(영제29조제3항제6호 광고물은 제외)-----

3. 4. (현행과 같음)

4의2.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에 제3조의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하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방법·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생략)

3. 영 제29조제5항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설>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 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바닥

1.·2. (현행과 같음)

3. 영 제29조제5항 및 이조 제5항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로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바닥(제10조제1항 제4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이용

5.·6. (생략)

제27조(수수료) ①·② (생략)

③ 수수료는 허가신청·신고 시 또는 안전점검 신청 시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광고물은 제외한다)

5.·6. (현행과 같음)

제27조(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과오납한 경우 등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한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27조제3항에서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던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에 따라 비용(세입 감소)이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현재 광고물등에 대한 허가는 자치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유표시구역에 한하여 서울시가 직접 허가하고 있음
- 그런데 그 사례가 적고 지금까지 개정안에 따른 반환 여건이 발생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 비용의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서울시의 자유표시구역 내 광고물등에 대한 허가 수수료 징수현황〉

연도	건수(건)	금액(원)	비고
2017	2	27,078,000	
2018	3	15,755,000	
2019	1	4,660,000	
2020	1	4,830,000	전반기 현재
계	7	52,323,000	건당 평균: 7,474,714원/건 최소 금액: 4,660,000원/건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예 산 분 석 관 한기백
 ☎ 02-3705-1284
 e-mail : hophan@seoul.go.kr